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4. 24.(월)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7. 소형준 의원 외 10명 발의 (의안번호 118호)

나. 회부일자: 2023. 4.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3. 4. 20.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 시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 여비 지급 기준이 변경될 때 우리 구 조례도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비의 지급기준(안 제6조)

-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호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별표6』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안 제7조)

- 의원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 여비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간 : 2023. 4. 7. ~ 2023. 4. 12.
- 의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천곤)

-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난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 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여비 지급기준이 변동될 때 우리 구 조례도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6조(여비의 지급기준)는 기존에는 우리 구는 ‘의원여비 지급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33조제1항제3호¹⁾에 규정된 [별표6]에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도 상위법에 연동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임.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1항은 기존에는 제3조(월정수당 지급) 사항이 없었으나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기존 의정활동비, 여비에 추가로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석 정지 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²⁾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치라고 사료됨.

○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3호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2)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의결’
의안번호 : 제2022-859호, 의안명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의결일 : 2022.12.19.

주문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243개 지방의회의 장에게 권고한다.

주요내용 :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제한 미흡,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 미흡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자구수정

나. 수정내용

제7조제1항 중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월정수당,”을 “월정수당 및”으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생략)	제5조(여비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외에 여행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 국외 여행을 할----- ----- ----- -----.
제6조(여비의 지급기준) 국내·외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여비의 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 제3조, 제4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 <단서 삭제>
<신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8
----------	--------

제안 연월일: 2023년 4월 24일

제안자: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자구수정(조문변경 및 신설)

2. 주요내용

제7조제1항 중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월정수당,”을 “월정수당 및”으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월정수당,”을 “월정수당 및”으로 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 제3조, 제4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성북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하며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86,1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 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의 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6]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